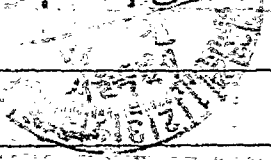


기 안 용 지

식품지도계

분류기호 문서번호	보이 1436	전화번호 429 09/8	전결규정 피장	조 전결사항
처리기관	V			
시행일자	72. 4. 8			
보존기한	L			
보 조 기 관	식품지도계장 김희만 47			
기안책임자	최천식 72. 4. 7			
경 수 참 조	유 신 조	발 신	통 계	
제 목	양육 참기름의 성분분석 결과			
<p>(제안)</p> <p>1. 수선회참조</p> <p>2. 동건</p> <p>3. 양육 참기름의 성분분석 및 누기 검사 의 회에 대한 지시금</p> <p>4. 분건의 대외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 터 별첨 사외와 같이 지시되었던 성분분석기관 확충</p>				



0-20-1-1-8A

190mm X 268mm 백상지 10g/m²

1959. 11. 10. 승인

067

과 부처님사 크리에이 리질이 없도록 할것

합부 1공문의사본 1부 끝

부신위 이상연주소 의사 18-26

(제2안)

부신 위신위칼조

제목 동건

1. 보이 1436-0313 (72. 3. 24) 포와 판
관 됩니다.

2. 양쪽 장의름의 양분주력 직봉에 대위여 보
건사회부장관으로 부어 별첨 사외와 같이 지시 되었
기 양의 지시기 바랍니다.

합부 1공문의사본 1부 끝

부신위 위대문주대정동 110리23 시동문

영등포구주조동 25-3, 여상태

보 건 사 회 부

식품 1436 - 6541

1972.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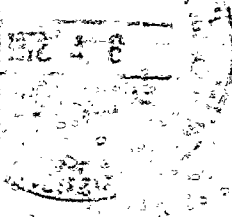
수신 나 1 - 11

제목 압착 참기름의 성분규격 적용 지시

1. 당부령 제376호 (71. 6. 1)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 중 참기름의 규정은 정제유에 대한 규격이나 정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압착한 참기름에 대하여도 "불검화물"의 규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현행 참기름 (정제)의 규격을 잠정적으로 적용할것을 지시하니 업무수행에 착오 없도록 하고 또한이를 귀관하 의생시험소에 주지시킬것이며.

2. 압착 참기름을 수거, 검사 의뢰코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알수 있도록 "압착참기름"의 표시를 함으로서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것.

문 선 취 의 인	접 수 일 시	서 우 특 별 시	전 결 주 성	장 관
	19. 4. 6	4. 6	과 접 수	
	접 수 번 호	7012	차 리 사	월 일



끝.



보 건 사 회 부 장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5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